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0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Susquehanna Asia Trading Pty Ltd

2. 조치내용

□ **(조치 면제)** 시장관행에 대한 계도조치 이전 행위이며, 조치 면제 선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공매도 규제 위반

○ Susquehanna Asia Trading Pty Ltd는 ’22.09.22.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 28,108주(3억 9,726만원)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